

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민의 상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5 월 8 일

여 수 시 장

정기호



여수시 조례 제2191호

붙임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91호

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제8조 “심사내용의 공표금지”를 “공표금지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심의”를 “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수상자 기록관리)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민의 상 취소 등)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

2. 공·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

제12조(추서)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

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)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·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<u>동일한 공적으로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5조(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심사내용의 공표금지) 수상자 선정에 관한 <u>심의</u>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공표금지) ----- <u>심사위원회</u>과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0조(수상자 기록관리) 시장은 <u>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1조(시민의 상 취소 등) 시장은 <u>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</u></p>

